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0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전은수 · 오세희 · 김우영
임미애 · 이학영 · 김영진
김용만 · 양부남 · 박홍배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냉·난방시설 마련과 운영상 지원근거가 없음. 그 결과 여전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고, 설치된 경우에도 상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리개 밋”을 “가리개,”로, “한다)을”을 “한다) 밋 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의”를 “밋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밋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2의2. 기후재난 대응시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범위, 방법 밋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비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한파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 ----- ----- ----- ----- ----- ----- -----가리개, ----- -----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 ----- ----- ----- ----- -----. -----.
1. · 2.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기후재난 대응시설: 폭염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 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신 설>

⑤ · ⑥ (생 략)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른 설치·개량·보수사업에 대한 지원·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⑨ -----제8항-----

-----.

⑩ -----

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
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
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신 설>

-----제8항-----

-----.

제20조의3(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비 지원) ①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폭염·한파로 인하
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
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
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에 따
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